

정보보호대학원 장학금 지급세칙

2006년 9월 1일 제정

2007년 3월 1일 개정

2008년 3월 1일 개정

2011년 3월 1일 개정

2016년 3월 1일 개정

2021년 3월 1일 개정

2021년 9월 1일 개정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의 정보보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개인 및 교외장학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 3조 (지급자 및 수혜금액) 각종 장학금의 수급자수와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

제 4조 (지급대상 등) ① 교내외 각종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당해학기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 2조의 기관(단체, 개인 등)에서 지급대상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② 전 항의 지급대상은 장학금을 이중으로 수혜할 수 없다. 다만, BK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제 5조 (종류) 본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
2. 조교장학금
3. 기타 근로장학금
4. 5학기이상 학비감면
5. 교외장학금
6. BK장학금

제 6조 (일반장학금) ① 석사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직전학기에 6학점이상(연구지도 교과목 제외)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가사사정 등 특별한 사유로 지도교수나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과정에 진입한 자 <신설 2021. 09.01.>

제 7조 (조교장학금) ① 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조교임용 규정에 의해 조교로 임용된 학생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교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은 조교임용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조 (기타 근로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행정실에서 행정보조로 근무하는 자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재원은 본 대학원 성과예산에서 충당한다.

제 9조 (5학기 이상 학비 감면) 소정의 교과 또는 연구지도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5학기 이상 등록한 1-3학점 신청 학생은 당해 수업료의 2분의 1 감면받을 수 있다.

제 10조 (복지 장학금) ① 본교 재직중인 총장발령 교직원(명예교수, 계약직원, 촉탁직원 포함)과 법인 임직원의 직계 비속이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학비를 감면한다.

② 이 학비감면의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비보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조 (교외장학금) ① 교외 장학금이란 교외기관 및 교외인사가 본 대학원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교외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학단체
2. 국가기관 및 그 산하 단체
3. 일반기업체
4. 기타 각종 기관

③ 교외 장학금의 신청, 제출서류, 선발방법, 지급인원, 지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교외기관 및 교외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조 (BK장학금) BK장학금이란 본 대학원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그 선정기준과 장학금액 등은 스마트시티 교육 연구단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3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세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2단계 BK21 장학금 이 중수혜 허용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라 규정명칭을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세칙’에서 ‘정보보호대학원 장학금 지급세칙’으로 변경함)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5조(종류) 개정, 제 6조 (외국인장학금) 삭제, 제 11조 (공무원 학비감면) 삭제)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4조, 제 5조, 제 9조, 제 12조, 제 13조)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개정)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행 중인 학·석사연계과정에 관한 사항들은 이 운영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